



소통하는 의정
공감받는 의회

제38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1. 1. 20.(수) 10:00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정상교 의원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2021년 1월 11일
- 회부일자: 2021년 1월 12일

3. 제안이유

- 충청북도 내 학교에 자생적으로 구성·운영되고 있는 학부모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학부모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법제화함으로써 학부모의 학교교육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학교 교육활동의 참여를 활성화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 설치(안 제3조)
- 명칭 및 기능(안 제4조 ~ 안 제5조)
- 회원(안 제6조)
- 임원 및 조직(안 제7조 ~ 안 제10조)
- 총회(안 제11조 ~ 안 제12조)
- 대의원회(안 제13조 ~ 안 제14조)
- 학년·학급·기능별 학부모회(안 제15조)
- 교육활동 지원 사업(안 제16조)
- 학부모성장지원센터 운영(안 제17조)
- 재정지원 및 회비모금 금지(안 제18조)

- 해산(안 제19조)
- 청산(안 제20조)
- 위임 규정(안 제21조)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내 각급학교의 학부모회 설치 운영과 학부모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각각 정하였음.
- 안 제3조에서는 공립학교 마다 학부모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사립학교의 경우는 학교법인의 정관 또는 해당 학교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음.
- 특히, 안 제3조 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유치원을 제외하였는데, 교육부 지침으로 각급학교의 학부모회는 법제화 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유치원의 경우 학부모회 설치를 권장하는데 그치고 있고, 유치원의 경우 학부모회가 조직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유치원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안 제4조부터 제6조에서는 학부모회의 명칭과 기능, 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음.
- 안 제7부터 제9조에서는 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0조부터 제15조에서는 총회, 대의원회, 학년·학급·기능별 학부모회 등 학부모회의 조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음.

- 안 제16조에서는 학부모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7조에서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학부모교육활동 지원 등을 위하여 학부모성장지원 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는 학부모회에 대한 예산 지원과 회비 징수 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었음.

- 안 제19조부터 안 제20조에서는 학교 통·폐합에 따른 학부모회의 해산과 청산에 관하여 정하고, 안 제21조 및 제22조에서는 위임규정과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학교 교육활동 운영에 학부모의 역할이 점차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많은 학부모들의 참여 기회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기존에 자생적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던 학부모회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 모두 타당하다고 사료됨.